

보도시점 2026. 7. 14.(화) 12:00 / 배포 2026. 7. 14.(화) 08:30
< 7.15.(수) 조간 >

'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결과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은 총 89.1조 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은 총 89.1조 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71%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35%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한 비율은 86.41%로 나타났다.

* (현금결제) ①현금·수표, ②만기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③만기10일 이하 상생결제

** (현금성결제) ①현금·수표, ②만기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등 (하도급법 제2조 제14항)
-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여 대금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지급일 이전에도 낮은 비용으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결제수단 (상생협력법 제2조 제8의2호)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공시대상 원사업자')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개요 】

- ▶ [공시 주체] 해당 반기에 하도급거래가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 ▶ [공시대상 항목] ① 지급수단별 지급금액(현금, 수표, 어음 등), ②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③분쟁조정기구
- ▶ [공시대상 거래] 직전 반기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지급된 하도급대금 관련 거래, 단 제도 시행일('23.1.12.) 이후 체결된 하도급계약부터 적용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가 2023. 1. 12. 시행된 이래, 2025년 하반기 하도급 거래까지 총 여섯번 공시가 이루어짐

이에 따라 2025년 하반기에 있었던 하도급거래에 대해 92개 기업집단 소속 1,417개 사업자가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였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현황>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은 총 89.1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이 많은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11.20조 원), 삼성(8.95조 원), HD현대(5.58조 원), 한화(5.37조 원), 엘지(4.77조 원) 순이었다.

2025년 하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71%,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35%로 나타났다. 한국지엠, 한진, BS, 네이버 등 전체 기업집단의 약 31%에 해당하는 29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24.51%), 하이트진로(26.37%), 엘에스(34.36%), 두산(39.59%) 순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의 경우, 15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전체 공시 하도급대금의 66.82%,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86.41%였다. 이는 대부분 대금 지급이 법정 지급기간(60일)의 절반 이하 기간인 30일 내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은 유코카캐리어스(100%), 파라다이스(100%), 엘지(80.96%), 에이치디씨(78.78%), 지에스(73.93%), 호반건설(71.98%), 삼성(71.11%), DN(70.40%) 등 총 8개였다.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0.16%(1,389억 원)로 파악되었다. 한편,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이랜드(14.02%), 대방건설(10.11%), SM(5.4%), 교보생명보험(2.94%), KG(2.51%) 순으로 나타났다.

*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60일 초과 시에는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함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비율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 총 43개 집단 내 144개* 사업자(10.2%)만이 하도급 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 집단별로 삼성(15개), 현대자동차(12개), 아모레퍼시픽(11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8개), 포스코(8개), 엘지(7개), 에스케이(6개) 등의 순임

【 반기별 주요 공시 결과 비교 】

구 분	'23년		'24년		'25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공시 사업자수	80개 집단 1,210개	82개 집단 1,297개	88개 집단 1,396개	88개 집단 1,384개	91개 집단 1,431개	92개 집단 1,417개
지급수단별						
현금 결제	84.02%	85.67%	85.24%	86.19%	84.68%	84.71%
현금성 결제	97.19%	98.54%	98.19%	98.58%	98.37%	98.35%
지급기간별						
30일 내	87.12%	87.64%	87.79%	86.68%	87.07%	86.41%
60일 내	99.63%	99.81%	99.86%	99.86%	99.89%	99.84%
분쟁조정 기구	98개 (8.1%)	108개 (8.3%)	120개 (8.5%)	129개 (9.3%)	131개(9.1%)	144개 (10.2%)

제도 도입 이래 현금결제비율은 84~86%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현금성결제비율은 97~9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과 6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은 25년 하반기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나,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점검의 주요 내용>

공정위는 이번 공시 점검을 통해 하도급대금 미공시* 사업자 3개**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공시 기간 내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해당 없음'으로 공시한 이후, 점검 기간에 신규로 공시하거나 정정 공시를 한 경우는 미공시에 해당함

** ①보이스루, ②스튜디오원픽(이상 카카오), ③원폴(에스케이)

또한,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3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토록 하고 앞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안내하였다.

* (예) 항목별 소계·합계 금액 및 비중을 미입력한 경우, 비중을 오기한 경우 (62.63%를 62,63%로 단위표시 오기) 등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동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원사업자별 대금 결제 건전성을 쉽게 파악·비교하여 협상에 활용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들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결제조건이나 관행을 개선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에서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를 중심으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 지급 여부를 추가 점검하는 등,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관행을 면밀히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1. 2025 하반기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이행 점검 결과
2. 기업집단별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3.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주요 내용 및 공시 대상 항목

담당 부서	기업거래결합심사국 하도급조사과	책임자	과 장	이태휘 (044-200-5002)
		담당자	사무관	조정환 (044-200-5020)

1

점검 배경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수급사업자가 공시정보를 원사업자와의 협상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고자 도입 (‘23.1.12. 시행)
- 2025년 하반기에 하도급대금이 지급된 하도급거래가 있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하도급법에 따라 2026. 2. 19.*까지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함
- * 매 반기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45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는데, 금번의 경우 45일째 되는 날이 2.14.(토)이고 이후 2.18.(수)까지 연휴였는바 그 익일인 2.19.(목)까지가 공시 기한임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II. 3. 가. 참조)

2

점검 내용

- (공시주체) 해당 반기에 하도급거래가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 (공시대상 항목) ①지급수단별 지급금액, ②지급기간별 지급금액, ③분쟁 조정기구 관련 사항을 공시
- ①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현금(수표), 어음 등 지급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되는 지급금액·비중 및 현금결제비율·현금성결제비율
- * 현금 및 수표, 상생결제(만기 10일 이하, 11일~60일, 60일 초과), 어음대체결제수단(만기 1일 이하, 2일~60일, 60일 초과), 어음(만기 60일 이하, 60일 초과) 등
- ②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기간*에 따라 구분된 지급금액과 그 비중
- * 10일 이내, 11일 ~15일 이하, 16일~30일 이하, 31일~60일 이하, 60일 초과
- ③ (분쟁조정기구)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분쟁조정기구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방법

- (공시 대상 거래) 직전 반기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지급된 하도급대금 관련 거래, 단 제도 시행일(23.1.12.) 이후 체결된 하도급계약부터 적용

3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행태 분석

- (공시현황) 전체 92개 집단 1,417개 소속회사가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
- (공시의무 위반) 미공시 3개 사업자
- ※ 미공시 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이하 '4. 공시규정 위반사업자 제재' 참조
- (지급금액)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9.1조원으로 나타남
- (기업집단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이 많은 집단은 현대자동차(11.20조 원), 삼성(8.95조 원), HD현대(5.58조 원), 한화(5.37조 원), 엘지(4.77조 원) 순임

<참고>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상위 10개 집단

순위	집단명	지급금액	순위	집단명	지급금액
1	현대자동차	11.20조원	6	씨제이	4.23조원
2	삼성	8.95조원	7	롯데	3.93조원
3	HD현대	5.58조원	8	에스케이	3.07조원
4	한화	5.37조원	9	포스코	2.63조원
5	엘지	4.77조원	10	지에스	2.35조원

※ 기업집단별 하도급대금 지급의 상세 현황은 <붙임 2> 참조

- (지급수단별) 공시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71%,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35%로 현금·현금성결제비율이 높은 편임

* 전체 하도급대금 중 이하 방식으로 대금 지급한 비율

- ▶ (현금결제비율) ① 현금·수표 ② 만기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③ 만기10일 이하 상생결제
- ▶ (현금성결제비율) ① 현금·수표 ② 만기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상생결제

- (기업집단별)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집단은 한국지엠, 한진, BS, 네이버 등 29개로, 전체 기업집단의 약 31%인 것으로 나타남
-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24.51%), 하이트진로(26.37%), 엘에스(34.36%), 두산(39.59%) 순으로 나타남

□ (지급기간별)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86.41%로 법정 지급기간(60일)에 비해 상당히 짧음

- 지급기간별 대금지급비율은 10일 이내 46.45%, 15일 이내 66.82%로 대금의 약 67% 정도가 15일 이내 지급이 이루어짐

<참고> 하도급대금 지급기간별 지급 비중

구분	10일 이내	11일~15일	16일~30일	31일~60일	60일 초과
비중	46.45%	20.37%	19.59%	13.43%	0.16%

- 60일*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는 0.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60일 초과 시에는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함

- (기업집단별) 92개 기업집단 중 66개 기업집단(72%)은 60일 초과 대금지급 비율이 0.10% 이하로 매우 낮음

* 60일을 초과한 대금지급 비율이 2.00% 이상인 집단으로는 이랜드(14.02%), 대방건설(10.11%), SM(5.40%), 교보생명보험(2.94%), KG(2.51%)가 있음

□ (분쟁조정기구) 총 43개 집단 내 144개 사업자(10.2%)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 기업집단별로 삼성(15개), 현대자동차(12개), 아모레퍼시픽(11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8개), 포스코(8개), 엘지(7개), 에스케이(6개) 등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종합분석) '25년 하반기의 경우,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직전 상반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30일 내 및 60일 내 지급한 대금비율은 '25년 상반기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분쟁조정기구 운영비율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반기별 주요 공시 결과 비교 】

구 분	'23년		'24년		'25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공시 사업자수	80개 집단 1,210개	82개 집단 1,297개	88개 집단 1,396개	88개 집단 1,384개	91개 집단 1,431개	92개 집단 1,417개
지급수단별						
현금 결제	84.02%	85.67%	85.24%	86.19%	84.68%	84.71%
현금성 결제	97.19%	98.54%	98.19%	98.58%	98.37%	98.35%
지급기간별						
30일 내	87.12%	87.64%	87.79%	86.68%	87.07%	86.41%
60일 내	99.63%	99.81%	99.86%	99.86%	99.89%	99.84%
분쟁조정 기구	98개 (8.1%)	108개 (8.3%)	120개 (8.5%)	129개 (9.3%)	131개(9.1%)	144개 (10.2%)

4 공시규정 위반사업자 제재 등

- (미공시) 보이스트루, 스튜디오원픽(이상 카카오), 원폴(에스케이)* 등 3개 사업자의 미공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완료

* 참고로, 원폴은 공시기간 경과 후인 2026. 4. 9. 「에스케이」 기업집단에서 계열 제외됨 [SK지오센트릭(주)이 보유하고 있던 원폴의 주식(100%)을 매각]

< 공시규정 위반사업자 과태료 부과내역 >

사업자명	기업집단명	위반유형	과태료
(주)보이스트루	카카오	미공시	400만원*
(주)스튜디오원픽	카카오	미공시	400만원*
(주)원폴	에스케이	미공시	400만원*

*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최초 위반'에 따른 20% 감경 적용

- (단순 누락오기) 공시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3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토록 하였음

* (예) 항목별 소계·합계금액 및 비중을 미입력한 경우, 비중을 오기한 경우 (62.63%를 62,63%로 단위표시 오기) 등

붙임 2
기업집단별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25년 하반기)

기업집단명	지급수단별(단위: %)		지급기간별(단위: %)					지급금액 (단위: 백만원)
	현금 결제비율	현금성 결제비율	10일 이내	11일~ 15일	16~ 30일	31~ 60일	60일 초과	
BGF	100.00	100.00	0.05	0.10	99.60	0.25	0.00	321,336
BS	100.00	100.00	7.39	5.75	41.56	44.53	0.77	425,163
DB	99.01	99.01	8.79	13.56	40.45	37.14	0.07	154,487
DL	90.29	100.00	32.12	22.86	27.48	17.30	0.25	1,536,219
DN	66.40	100.00	70.40	2.58	25.79	1.24	0.00	460,248
HD현대	98.51	100.00	39.21	36.49	20.23	4.07	0.00	5,582,068
HL	72.76	100.00	40.62	6.67	31.58	21.14	0.00	1,014,144
KG	24.51	24.51	38.52	43.99	10.36	4.63	2.51	687,878
SM	93.23	93.23	10.71	3.23	21.64	59.01	5.40	437,475
고려에이치씨	98.46	100.00	5.91	15.31	40.62	38.16	0.00	270,121
교보생명보험	100.00	100.00	9.68	11.32	44.41	31.65	2.94	48,181
글로벌세아	97.17	97.17	5.19	5.20	11.62	77.79	0.20	521,226
금호석유화학	69.74	100.00	51.93	0.66	24.09	23.31	0.00	149,248
네이버	100.00	100.00	62.76	22.04	7.37	7.83	0.00	147,990
넥슨	100.00	100.00	13.95	30.97	47.14	7.94	0.00	7,334
넷마블	97.21	97.21	3.37	78.43	12.76	5.44	0.00	457,472
농심	64.99	100.00	32.12	21.11	38.27	8.49	0.02	207,174
농협	100.00	100.00	24.23	21.39	38.15	15.91	0.31	721,494
다우키움	99.99	99.99	31.47	36.10	25.43	6.97	0.03	24,507
대광	100.00	100.00	8.34	2.75	78.07	10.84	0.00	243,371
대방건설	100.00	100.00	2.18	8.36	29.74	49.61	10.11	73,967
대신	100.00	100.00	22.22	34.67	24.01	17.91	1.19	537
동국제강	83.43	99.39	16.51	2.14	44.29	37.05	0.01	234,177
동원	61.95	99.95	16.05	27.32	22.27	33.87	0.49	909,391
두나무	100.00	100.00	8.33	64.20	26.40	1.07	0.00	13,303
두산	39.59	99.98	36.85	42.14	8.26	12.75	0.01	1,221,644
롯데	92.38	99.91	52.38	17.09	26.26	4.26	0.01	3,931,171
미래에셋	100.00	100.00	4.93	22.21	48.15	24.70	0.00	6,021
반도홀딩스	73.88	73.88	1.62	0.84	90.32	7.23	0.00	155,801
부영	53.47	100.00	21.18	41.60	23.16	14.06	0.00	80,855

기업집단명	지급수단별(단위: %)		지급기간별(단위: %)					지급금액 (단위: 백만원)
	현금 결제비율	현금성 결제비율	10일 이내	11일~ 15일	16~ 30일	31~ 60일	60일 초과	
빗썸	100.00	100.00	10.29	8.60	70.15	10.96	0.00	9,395
사조	61.16	69.39	29.63	15.92	39.11	14.18	1.16	339,368
삼성	94.61	100.00	71.11	15.54	9.68	3.67	0.00	8,950,742
삼양	63.86	100.00	37.64	20.34	25.46	16.56	0.00	128,058
삼천리	100.00	100.00	11.67	3.59	55.92	28.82	0.00	49,060
삼표	91.64	100.00	11.23	7.05	71.51	10.22	0.00	123,280
세아	81.30	96.89	12.75	40.12	12.78	34.36	0.00	293,448
셀트리온	90.03	90.03	2.47	7.46	12.83	77.24	0.00	62,545
소노인터내셔널	100.00	100.00	28.37	10.30	24.32	36.88	0.12	88,058
신세계	89.60	99.94	50.24	25.33	20.82	3.61	0.00	1,176,810
신영	100.00	100.00	11.77	6.57	60.21	20.21	1.24	85,042
씨제이	64.38	100.00	26.89	18.68	31.66	22.75	0.01	4,225,959
아모레퍼시픽	97.58	100.00	49.36	20.56	22.85	7.22	0.01	375,288
아이에스지주	51.02	51.02	12.31	7.11	62.74	17.63	0.21	125,258
애경	50.90	99.40	1.94	9.03	30.94	58.09	0.00	145,250
에스케이	78.38	99.99	62.42	15.55	15.55	6.37	0.11	3,065,478
에쓰-오일	100.00	100.00	0.13	58.45	26.69	14.73	0.00	32,248
에이치디씨	95.66	100.18	78.78	7.08	11.22	2.79	0.13	1,095,849
에이치엠엠	100.00	100.00	35.53	0.48	30.27	33.52	0.20	41,355
에코프로	86.73	100.00	8.95	0.61	22.39	66.28	1.77	28,194
엘아이지	71.57	98.07	64.53	25.28	5.45	4.57	0.17	1,219,282
엘에스	34.36	91.24	51.84	25.09	9.74	13.28	0.05	2,034,988
엘엑스	62.48	100.00	54.60	7.74	27.30	10.35	0.00	1,042,765
엘지	97.93	99.30	80.96	11.80	4.31	2.91	0.02	4,773,605
엠디엠	100.09	100.09	16.08	3.54	60.28	20.10	0.00	22,866
영원	100.00	100.00	16.54	44.17	34.51	4.78	0.00	94,236
영풍	70.28	99.12	30.65	39.83	16.23	13.28	0.00	245,513
오씨아이	58.58	71.59	7.64	2.24	31.92	57.59	0.62	217,352
오케이금융그룹	100.00	100.00	15.98	10.63	73.39	0.00	0.00	3,331
원익	96.19	99.80	5.06	67.13	15.01	12.77	0.03	314,798
유진	97.71	100.00	15.92	9.59	58.34	16.14	0.01	232,357
유코카캐리어스	100.00	100.00	100.00	0.00	0.00	0.00	0.00	10

기업집단명	지급수단별(단위: %)		지급기간별(단위: %)					지급금액 (단위: 백만원)
	현금 결제비율	현금성 결제비율	10일 이내	11일~ 15일	16~ 30일	31~ 60일	60일 초과	
이랜드	100.00	100.00	14.25	9.50	25.65	36.59	14.02	249,033
장금상선	100.00	100.00	2.26	9.74	27.32	60.61	0.06	120,980
중앙	96.88	100.00	39.23	12.39	35.24	12.51	0.64	197,115
중흥건설	98.10	100.00	64.95	15.72	9.40	9.83	0.09	2,343,548
지에스	96.43	100.00	73.93	12.55	6.63	6.90	0.00	2,351,909
카카오	99.99	99.99	31.31	15.98	24.37	28.32	0.02	312,009
케이씨씨	85.30	100.00	27.15	5.34	57.92	9.59	0.00	814,698
케이티	97.72	98.28	20.60	17.84	48.79	12.74	0.02	1,999,537
케이티앤지	99.66	99.66	9.12	2.55	13.78	74.53	0.01	324,937
코오롱	66.31	100.00	9.69	17.64	21.19	51.44	0.04	1,016,107
쿠팡	72.74	100.00	0.60	39.89	22.96	36.54	0.00	2,037,654
크래프톤	100.00	100.00	30.28	3.64	64.47	1.28	0.33	1,736
태광	100.00	100.00	7.21	13.87	61.69	17.24	0.00	53,214
태영	88.94	100.00	7.05	18.19	48.89	24.94	0.93	264,795
파라다이스	100.00	100.00	100.00	0.00	0.00	0.00	0.00	51
포스코	99.51	100.00	37.91	37.07	11.16	13.86	0.00	2,627,026
하림	98.02	98.48	51.24	20.59	24.33	3.84	0.00	194,883
하이브	100.00	100.00	4.93	3.75	86.68	4.65	0.00	148,059
하이트진로	26.37	100.00	6.62	19.47	17.51	56.40	0.00	100,935
한국엔컴퍼니그룹	42.82	96.47	64.54	5.64	18.65	10.64	0.52	1,030,459
한국지엠	100.00	100.00	0.00	0.00	0.00	100.00	0.00	1,142,950
한국항공우주산업	80.30	80.30	67.39	6.07	6.31	20.14	0.09	556,347
한솔	70.95	99.78	15.51	6.69	32.71	45.07	0.03	320,852
한진	100.00	100.00	4.98	9.89	75.28	9.85	0.00	1,075,315
한화	82.12	99.33	55.50	17.17	12.09	15.10	0.15	5,372,762
현대백화점	57.82	96.73	29.26	10.84	48.04	11.86	0.00	839,880
현대자동차	87.22	99.81	51.30	28.40	15.00	5.30	0.00	11,200,015
현대해상화재보험	99.91	99.91	16.34	21.46	58.08	4.12	0.00	39,293
호반건설	87.44	90.89	71.98	19.72	6.54	1.76	0.00	647,735
효성	75.86	96.74	62.62	10.33	9.34	17.65	0.06	1,071,272
총합계	84.71	98.35	46.45	20.37	19.59	13.43	0.16	89,140,898

붙임 3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주요 내용 및 공시대상 항목

- (도입배경)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수급사업자가 공시정보를 원사업자와의 협상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고자 하도급법 개정으로 도입(2022. 1. 11. 개정, 2023. 1. 12. 시행)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 하도급대금 결제 정보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공유하여 하도급 전 단계에서의 거래 조건 개선 유도
- (주요내용) 해당 반기에 “하도급거래가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①지급수단별 지급금액, ②지급기간별 지급금액, ③분쟁조정기구 관련한 사항을 공시
 - ①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현금(수표), 어음 등 지급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되는 지급금액·비중 및 현금결제비율*·현금성결제비율**
 - * 현금수표, 만기1일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만기 10일 이내의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 지급비율
 - ** 현금·수표, 만기60일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 지급비율
 - ②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기간*에 따라 구분된 지급금액과 그 비중
 - * 10일 이내, 11일 ~15일 이하, 16일~30일 이하, 31일~60일 이하, 60일 초과
 - ③ (분쟁조정기구)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및 분쟁조정기구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방법
- (공시 대상 거래) 직전 반기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지급된 하도급대금 관련 거래, 단 제도 시행일(23.1.12.) 이후 체결된 하도급계약부터 적용
- (공시 빈도 및 시기) 공시는 매 반기마다 하되, 매 반기가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45일 이내* 공시해야 함
 - * 기간계산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II. 3. 가.)
- (공시 방법) 전자공시시스템(금융감독원 DART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시양식(전자문서) 제출

< 공시대상 항목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참조) >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 및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 타	계
		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소 계	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소 계	어음 (만기 60일 이하)	어음 (만기 60일 초과)	소 계		
지급 금액														
비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현금결제비율										⑮				
현금성결제비율										⑯				

※ ⑮(현금결제비율) = ① + ② + ⑥

⑯(현금성결제비율) = ① + ② + ③ + ⑥ + ⑦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비중					
비고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O/X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신청 절차.방법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비고	